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 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험성 및 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제7조제3호 및 안제117조 제9호 신설)

직업성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위탁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처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기준 변경(안제59조 및 별표18)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에 따른 지도기준을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하고, 기술지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건

설현장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제96조의2 및 별표35타목·파목 신설)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신설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일몰규정 폐지(부칙 제30256

호 제3조 삭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야간작업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 접근성 제고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부칙에서 정한 동

조항의 일몰규정을 폐지

마.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안 별표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사고성 재해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높은 일부 업종을 추가하고, 작업의 위험성 및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

은 ‘운수 및 창고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고위험 업종 수준으로

조정·강화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건축·토목 분야 자격 및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고, 공사금액 120억원 미

만 1,500억원 이상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

사.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안 별표28)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자격자 1명 이상을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을 정비

4. 주요 토의 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25. ~ 6. 7.)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강화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 예방을 위한 사업

제59조의 제목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발주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4조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보호·증진 목적의 직업성 질병 조기발견·예방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3호, 제21호, 제24호,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3호, 제29호,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같은 란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25호 및 제26호로 하며, 같은 표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제32호부터 제49호까지로 한다.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4. 환경정화 및 복원업

27. 운수 및 창고업

별표 3 제23호(종전의 제21호) 중 “해체, 선별 및”을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으로 하고, 제29호(종전의 제25호) 중 “제19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란 제31호(종전의 제27호) 중 “제21호”를 “제23호, 제24호”로 하고, 같은 란 제49호(종전의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 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

		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 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하로 포함될 수 있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하로 포함될 수 있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하로 포함될 수 있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하로 포함될 수 있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 이하로 포함될 수 있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 이하로 포함될 수 있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 이하로 포함될 수 있다).
--------	---	---------------------------------------

별표 4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이 기사 자격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별표 18 제1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으로,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를 “체결해야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2) 중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건설현장에 가목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권고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도급인의 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 및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유형과 사고유형별 예방대책,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4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기록”을 “관리”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4)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기술지도가 끝난 후”를 “기술지도계약 종료일로부터”로 한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한 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분기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2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 3)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별표 35 제4호 타목부터 규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 및 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128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휴게시설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 3항제2의3			1,500	1,500	1,500
파. 법 제128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휴게시설 의 설치·관리기준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 4항제6의2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각호별 각목당)	50	250	500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 제96조의2,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0256호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지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별표1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최초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해체·제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업체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
는 자는 제외한다.

1. ~ 4.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
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
하는 사업장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가. 전화 상담원(39912)
-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 다. 텔레마케터(5313)
- 라. 배달원(922)
-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제116조제4항 전 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조(유효기간) ① 제97조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건
강검진기관은 2021년 1월 18일
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
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
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해당 기관을 다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2023년 2월 1일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
다.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보호·증진 목적의
직업성 질병 조기 발견·예방에
관한 사무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09